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29일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·박기열·이병도
김생환·김소영·장인홍
최 선·홍성룡·박순규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정부는 ‘한국판 뉴딜’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,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‘디지털 뉴딜’과 ‘그린 뉴딜’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추진 중임. 특히,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중 ‘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’에 ‘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(C-ITS)’ 등의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반개념인 ‘지능형교통체계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서울시 정책의 적극 추진을 뒷받침하고, 이러한 정책이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하여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'지능형교통체계'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제7호).

나.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
·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13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,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"지능형교통체계"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·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,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) 시장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